

「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」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 희



2020년 12월 30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41호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28조제5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기 획 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기 획 부 장 이 현 동
	직 위 성 명	경 영 전 략 팀 장 박 인 희
	담당자 성명 (전 화)	이 태 권 (390-7615)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근무성적 평정방법) ①~④ <생략> ⑤ <u>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</u> <u>가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최근의</u> <u>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.</u> ⑥~⑨ <생략>	제28조(근무성적 평정방법) ①~④ <현행과 같음> ⑤ <삭제> ⑥~⑨ <현행과 같음>